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9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 김소희・이양수・김대식

엄태영 · 김상훈 · 주호영

서지영 · 이헌승 · 안상훈

김예지 · 최은석 · 김위상

곽규택 • 김기현 • 권영세

이만희 • 박덕흠 • 박수민

김성원 · 김형동 · 박형수

김선교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 관으로 지정하고,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 행,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 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

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업무를 수행하게 할"을 "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"로 하고,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
- 2.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의 수립·시 행 지원
- 3.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분석·평가 지원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 책의 수립·집행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	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
특별법 일부개정법률	특별법 일부개정법률
제7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산	제7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
업통상자원부장관은 <u>자원안보</u>	<u>다음 각</u>
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	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	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와 관련
안보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	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
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제8	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
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	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
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	<u>다)으로 지정할</u>
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	
다.	
<u><신 설></u>	1.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
	한 정보의 관리
<u><신 설></u>	2.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
	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의
	<u>수립·시행 지원</u>
<u><신 설></u>	3.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에
	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분
	<u>석ㆍ평가 지원</u>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
	위한 정책의 수립・집행 지원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